#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46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7.

발 의 자:윤준병·강준현·김윤덕

박희승 • 신영대 • 박홍배

조계원 · 안호영 · 서영교

허 영·장철민·위성곤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또는 경기침체·대량실업·남북관계의 변화·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인해 작년에 56.4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, 올해 역시약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이 10% 내외의 세수 추계 결손이 발생한 경우 자체 지출구조조정을 하거나 강제 불용 결정 등을 통해 지방정부·교육청 등에 책임을 전가해 국회의 예산 심의·확정권을 형해화시키고 있음.

이에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%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세출예산의 목 단위사업 중 10% 이상

에서 불용이 발생하거나 불용액이 전체 세출예산의 10% 이상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국회의 심의·확정권을 보장하고, 정부의 세입·세출예산편성에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89조제1항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 중 "국회"를 "매년 4월 15일까지 국회"로 한다.

제66조제4항 중 "국회"를 "매년 4월 15일까지 국회"로 한다.

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국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4.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%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- 5. 세출예산의 목단위 사업 중 10%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세출예산 대비 불용액이 10% 이상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	제30조(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
고)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9조	고)
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	
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	
편성지침을 <u>국회</u> 예산결산특별	<u>매년 4월 15일까지 국</u>
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	<u> </u>
10. ~ 16. (생 략)	10. ~ 16. (현행과 같음)
제66조(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)	제66조(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)
① ~ ③ (생 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	4
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주체에게	
통보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	
침을 <u>국회</u> 예산결산특별위원회	<u>매년 4월 15일까지 국회</u>
에 보고하여야 한다.	
	,
⑤ ~ ⑧ (생 략)	⑤ ~ ⑧ (현행과 같음)
제89조(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)	제89조(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)
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	①
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	
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	
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	
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. <u>&lt;단서</u>	<u>다만,</u>

<u>신설></u>

1. ~ 3.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② (생략)

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국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% 이상 감소하거나 감 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- 5. 세출예산의 목단위 사업 중 10%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세출예산 대비 불용액이 10% 이상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② (현행과 같음)